

# 은계유치원 운영위원회 규정

제 정 : 2021. 09. 01.

개 정 : 2023. 04. 13.

##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유아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경기도 공립유치원유치원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은계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명칭 및 설치)** 이회는 은계유치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라 하고 은계유치원에 설치한다.

## 제 2 장 위원의 구성 및 선출

**제 3조(위원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0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명, 유치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은 본 유치원에 재학 중인 유아의 학부모이어야 한다

② 교원위원은 본교 교원이어야 한다.

③ 위원은 다른 유치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5조(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단, 제3호부터 제7호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한다.

①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 할 경우

② 학부모위원이 자녀의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한 경우. 단, 졸업으로 인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③ 위원이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④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경우

- ⑤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
- ⑥ 위원이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⑦ 사직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한 경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경기도 공립유치원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2013.02.28.)

②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부터 다음년도 3월 말일까지로 한다.(단, 2021년도에는 9월 1일 개원으로 위원선출일로부터 다음년도 3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7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상정된 안건에 한하여 유치원 운영에 관여할 수 있다.

③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이외의 다른 어떤 비용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은 본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직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8조(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단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와 학부모회 임원선출관리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 가능하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고공보, 투표표 당선자 공고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때까지 운영된다.

③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유치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 2인 이내로 유치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④ 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유치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은 교원2명을 직접 선출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⑤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은 유치원 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제9조(위원의 선출)**① 학부모 위원 선출은 전체 학부모 회의에서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필요시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선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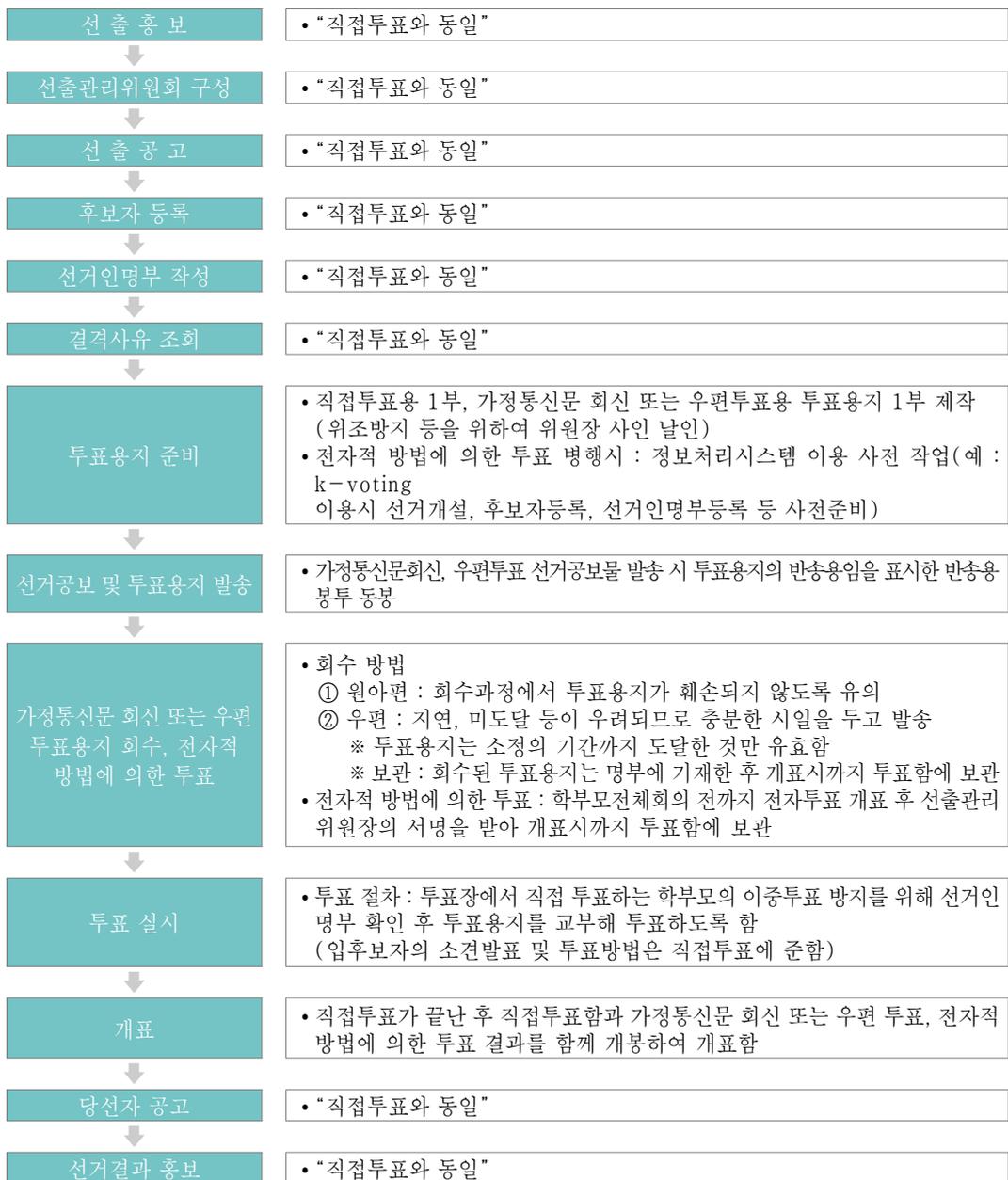
\* 직접 투표와 가정통신문 회신 또는 우편, 전자적 방법을 병행하는 경우 규정에 선출 절차를 명시하여야 함.

②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

③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④ 입후보자 등록 마감 후 선거일 투표 개시 시작 전까지 입후보자가 위원정수와 동수이거나 적을 경우, 입후보자를 무투표 당선으로 처리하고 미달된 인원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추가로 선출한다.

**\* 직접투표와 가정통신문 회신 또는 전자적 방법, 우편에 의한 투표 병행 선출**



제10조(위원의 선출 시기) ①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전까지

선출한다. 다만,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개학이 연기되는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위원의 선출을 연기할 수 있다.

② 다만 위원의 선출이 연기된 때에는 다음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현재의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투표방법 및 당선자 결정)** ① 투표는 무기명 직접투표로 한다.

②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단, 동수투표자가 있어 위원의 정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입후보자 등록 마감 후 선거일 투표 개시 시작 전까지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동수이거나 적을 경우, 입후보자를 무투표 당선으로 처리하고 미달된 인원에게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추가로 선출한다.

**제12조(보궐선거)** ① 위원이 임기중에 결원될 때에는 보궐선출을 실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보궐선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보궐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 3 장 회의운영 등

**제13조(서류제출 요구)** ① 「경기도 공립유치원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가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유치원장에게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유치원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제출서류, 제출요청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요청을 할 수 없다.

**제14조(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4회로 한다.

② 회기는 회의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위원장이 궐위되는 경우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④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학교장이 회의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단, 학교장이 긴급하게 심의해야 할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의 1/4이상의 연

서로 발의한다.(단,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제출한다.)

⑥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5조에 따른 위원 자격상실 및 규정의 제·개정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5조(운영 경비)** 위원의 연수경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유치원 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16조(심의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유치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유치원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5.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
6.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7. 유아의 보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시행령 제22조의 5)
8.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
9.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학교장의 공모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10.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대통령령 및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유치원 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③ 제13조에 따른 건의 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7조(회의 공개원칙)** ①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5일 전까지 유치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린다.

**제18조(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유치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유아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회의운영 규칙 및 공고)** ①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 규칙으로 정한다.

②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학교장이 7일 이상의 기간 동안 유치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